

소규모 건축현장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한

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

I. 사업개요

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 시 강관비계 &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의 차액(임대·설치·해체비)을 현장별, 같은 사업주별 최대 **1천만원** 까지 지원

가. 목 적

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추락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확보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규모현장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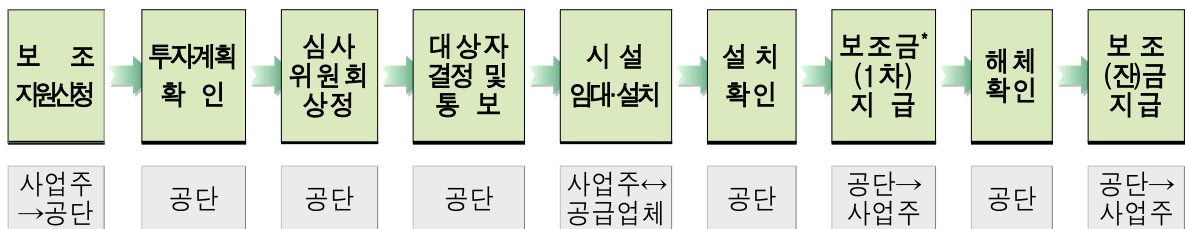
나. 추진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)
-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(규칙)

다. 예 산 : 70억원('13년)

라. 시행기간 : '13년 예산 소진 시 까지

II. 보조금 지원 절차



* 보조금(1차)지급 : 보조금(1차)지급을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결정금액의 **최대 70%까지** 지급 가능

III. 보조대상

- 가. **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** (부가세 포함) **건축현장**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

<보조대상 제외>

- ①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,000위 이내 건설업체
-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
- 나. 설치규모 :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* 일체

* 시스템비계 : 건축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, 수평재, 가새재, **승강통로**, **안전난간**, **작업발판**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

IV. 보조한도

- 가. 보조한도 : 사업주 당 **1천만원** 이내

- 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10억 미만 현장이 다수라도 총 지원 금액은 1천만원 이내
- 동일 사업주 구분 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

- 나. 지원기간 : **최대 5개월** 이내

- 투자완료(해체확인)요청기한 :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V. 사업 참여방법

- 가. 보조지원 사업주

- **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**(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/지도원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
- 나. 공급업체

- 등록방법 : **등록신청서**를 작성하여 공단본부(건설재해예방실)로 제출(연중 수시)

☎ 담당자 연락처 : 032-5100-626, 팩스 : 032-512-8852

이메일 : wbh013@hanmail.net

- 등록기준 : 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사업을 희망하는 업체('13년 한 적용)